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04후3300 등록무효(실)

원고, 피상고인 원고

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

피고, 상고인 피고

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은진

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04. 10. 22. 선고 2004허783 판결

판 결 선 고 2006. 6. 16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1.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, 이에는 당

해 등록실용신안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실용신안을 출원·등록하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(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후983 판결,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3후373 판결 등 참조).

기록에 의하면, 원심은, 원고가 그 명의로 출원·등록한 실용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(등록번호 제190338호)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등록무효심판청구를 당한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,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,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 제1점으로 내세운 주장과 같은,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.

- 2.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과 비교대상고안 2 내지 4에 나타나 있는 일부 구성을 채택·결합한 고안과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,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 제2점으로 내세운 주장과 같은,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.
- 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_____

| 주 심 | 대법관 | 박재윤 | |
|-----|-----|-----|--|
| | 대법관 | 김황식 | |